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2022.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공모사업으로서,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코자 지역 전문 단체 위탁 필요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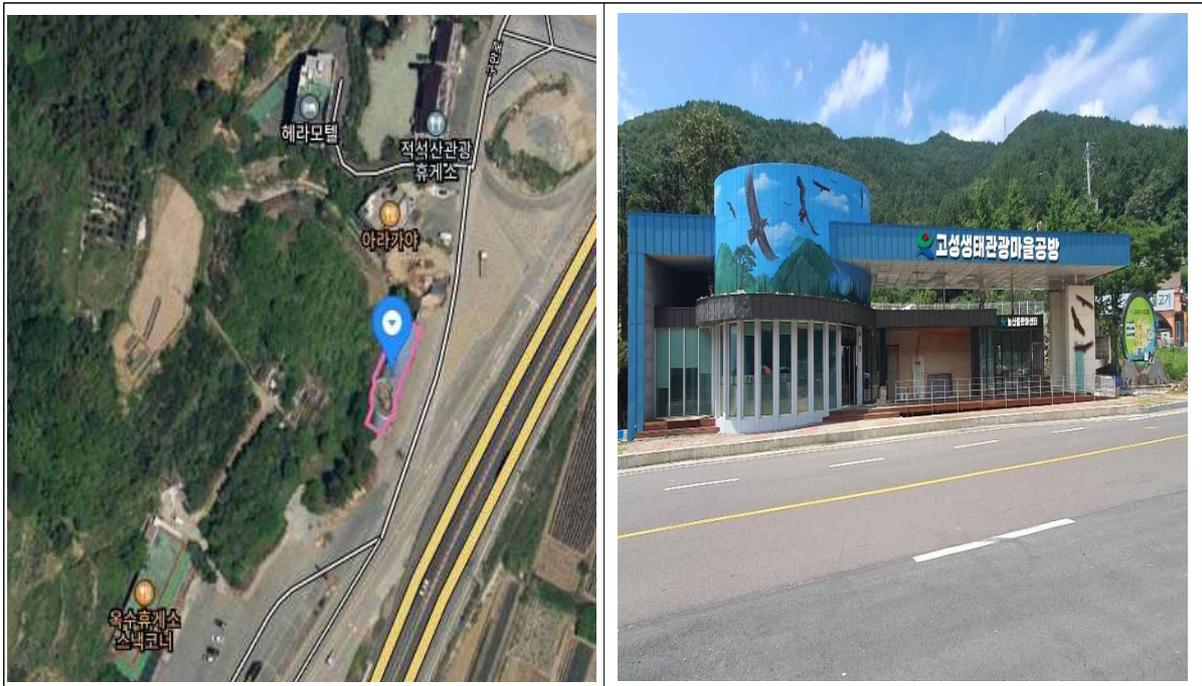
2. 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탁운영)

3. 위탁 내용

- 시설현황: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건축물 1동 (舊, 관광안내소)
 - 설치장소: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 설치규모: 233.31㎡ 정도
 - 리모델링 추진: 2023.03. ~ 2023. 09.
 - 사업비 : 300백만원(특교세 1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 시설구성: 생태관광 홍보 전시실, 사무실, 교육장, 지역특산물판매장
- 위탁개요
 - 위탁 기간: 2024. 01. 1. ~ 2025. 12. 31.(2년)
 - 위탁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위탁 사무: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공간 지원
 - 고성군 지역 특산물 판매 및 기념품 판매등 지원
 - 생태관광 관련 전시·홍보 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생태관광마을 공방 시설물 유리 관리
- 위탁 운영비: 연간 50백만원(2024년 기준)---붙임과 같음
- 사업장 위치도 및 현황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붙임참조

-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으로 공적 서비스의 다양성 추구 및 직영과 비교 운영비용 절감등 경제적 효율성 효과등 지역단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적정

5.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1.: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01.: 민간위탁 실시

6. 기대 효과

- 고성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인력 활용 등 활성화 기대

7. 참고자료

1.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2. 생태관광 마을공방 위탁비 및 산출내역 1부
3. 생태관광 마을공방 시설 개요 1부
4. 관계법령 1 부 끝.

(붙임 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결과
공 공 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육성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공공재 공급을 위함. ○ 생태관광관련 안내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수탁자 명의 및 책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 ○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로 관리 운영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로 민간위탁이 적정	적정
	② 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 생태관광 마을공방은 고성군의 생태관광을 안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 ○ 행정 주도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단조로움 보다 지역단체의 특색있고 창의적인 참여가 포함된 자발적이고 내재적 발전을 통한 공공성 확보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	적정
효 율 성	③ 경제적효율성	○ 민간위탁은 기존 지역에서 활동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 민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무원 인력절감, 인건비 경감등을 통해 비용절감등 경제적 효율성 기대	적정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 생태마을공방은 군민과 방문객을 위하여 고성의 생태관광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이 서비스 공급 및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적정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이 수시로 가능하며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 위탁비 지출 내역을 통한 목적대로의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음.	적정

검토기준	검토내용	결과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4조(계약체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조례 제17조(지도·점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생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공간으로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민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적정
⑧ 그 밖의 민간 위탁적정성 검토를 필요한 사항	○ 향후 추가 사항 발생시 수시 검토하고자 함.	적정

(붙임 2)

소요 위탁비 및 산출근거

구 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 고
수입액 (A)	체험참가비 - 2,000원 *500명	1,000	
운영비 (B)	소 계	51,000	집계반올림
	인건비(상시근로 1명, 8시간)	40,659	최저임금, 4대보험포함
	운영비 - 프로그램운영비	3,360	
	공공운영비(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건물경비시스템비 등	2,040	
	기타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4,936	
보전분 (B-A)	운영비 보전분(51,000 - 1,000)	50,000	

- 운영비 세부산출 내역

구 분	소요액(추정)	산출근거 (단위: 천원)	비고
계	51,000 (50,995)		집계반올림
인건비	40,659	- 기본급: 24,728,880원 (2,060,740원×12개월×1명) ※ 월 209시간(주5일근무,40시간)기준 통상임금(유급휴일수당 포함) - 연차수당: 연간 1,183,200원 (78,880원×15일×1명) - 시간외근무수당: 6,152,640원 (일요일 8시간 근무) (9,860원×1.5배×8시간×52일×1명) - 휴일수당 394,400원 (연간 10일) - 4대 보험료: 3,411,166원 - 퇴직금: 2,646,124원 - 급식비 2,142,000원 (1일 7,000원)	최저임금, 4대보험포함
공공 운영비	2,040	- 공공요금: 2,040,000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건물관리시스템비	
프로그램 운영비	3,360	- 프로그램운영비: 체험 재료비 구입등	
기타	4,936	- 일반관리비 연간 300천원 - 부가가치세 4,636천원 - 이윤 (비영리법인 제외)	

(붙임 3)

생태관광마을공방 리모델링 조성사업

□ 생태관광 마을공방 리모델링 조성사업 개요

- 예산액: 금 300백만 원(특교세 100백만 원/ 군비 200백만 원)
- 사업기간: 2023. 3. ~ 2023. 9.
- 사업위치: 회화면 남해안 대로 4071일원
- 사업내용: 건물 리모델링 233.31㎡(지상1층)
 - 공간구성 : 생태관광 마을공방 사무실, 생태관광 콘텐츠 홍보
관광상품전시, 지역특산물판매장

□ 추진경과(요약)

- 2022. 03. : 고성생태관광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2. 04. : 관광안내소 건물 양여 취득(공유재산심의회)
- 2022. 06. : 관광안내소 건물 소유권이전
- 2022. 07. :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 선정(행안부)
- 2023. 03. :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3. 05. :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공사계약
- 2023.09. :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 2023.09. : 사업 준공
- 2023. 09. : 2024.당초예산 운영비편성(62백만원)
- 2023. 09. : 직영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2명)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능력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재계약할 경우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고성군 생태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